

※ 보도일시 : 6월2일(월) 12시 이후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

광우병 쇠고기 홍보 및 사회공공성 파괴 등 부당한 행정업무 거부선언 기자회견

일시 : 2008. 6. 2.(월) 11:00

장소 : 국회 정론관

회견순서

1. 참가자 소개
2. 경과보고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 별첨자료

1. 광우병 쇠고기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노조 주요 투쟁계획
 2.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사유화 정책 비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50-98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7층 / 전화(02)2631-1948 / 전송(02)2631-1949 / www.kgeu.org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습니다

지난 5월29일 정운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광우병 쇠고기 관련 고시발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광우병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완전 개방을 의미합니다. 이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팔아넘긴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고시발표로 ‘민심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국민들도 고시발표 직후 5만 규모의 촛불집회로 화답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로 시작된 국민들의 목소리는 물 사유화 반대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등 ‘공공성’을 지키자는 요구로 자연스레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반공공 정책의 배후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임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최근 촛불집회의 구호가 ‘이명박 아웃’으로 확장된 데에는 이처럼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공공성 파괴정책’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 공무원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 1항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임용선서문을 통해 “정의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 공직자들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반상회를 통해 주민설명회에 나서도록 하는 등 ‘홍보지침’을 내리며 공무원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등 각종 사유화와 등록금 폭등을 불러올 국립대 법인화, 공무원 감원을 통한 공공서비스 후퇴 등의 정책도 채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이 광우병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사유화와 구조조정으로 공공행정 서비스가 소수 부유한 국민들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키로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공무원노조 소속 모든 공무원 노동자는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합니다. 이같은 행정거부는 계획 수립과 입안, 과업수행 등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당행정 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할 경우, 공무원노조는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심판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에도 적극 결합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주)효성광주냉장 봉쇄투쟁에 총력을 다해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실시하고 있는 촛불문화제와 집회 조합원 참가방침도 계속해서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헌정 역사상 최초로 벌어질 공무원의 전국적.집단적 행정거부 운동은 공무원 신분을 건 저항운동입니다. 정부는 공무원법 위반 등을 빌미로 온갖 탄압을 해오겠지만, 광우병 쇠고기와 공공성 해체, 이명박 반대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을 믿겠습니다. 지금 시기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다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모습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경찰력을 동원해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민적 저항이 잠잠해질 것이란 생각은 오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광우병 위험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선언하고, 관련 장관고시를 철회해야 합니다. 협상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는 쇠고기 협상 무효화와 사회공공성 말살 중단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08. 6.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별첨 1>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공무원노조 주요 투쟁계획

1.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행정 거부운동

가. 행정거부 선언 기자회견

- 시기 : 5월29일 중집 직후
- 내용 :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 및 공무원 감원계획, 물사유화 계획, 민영화, 아웃소싱 계획, 국립대 법인화 계획 수립 등,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 거부 선언

나. 조합원 설문조사 실시

- 위 선언내용을 기초로 해당 업무분야 및 조합원 의식 설문조사 실시

다. 부당지시 거부 결의 서명 실시

- 설문을 기초로 공무원노동자로서 정치권력에 편승을 거부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 해당 업무분야에 대해 기획, 행정집행 등 거부운동을 결의하는 서명 진행

라. 본부-지부별 기관장 면담

- 위 선언내용을 기초로 부당한 명령을 하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기관장 면담 본부-지부별 추진

마. 주민소환운동

- 만일 이같은 공무원노조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당한 업무명령을 계속해서 내릴 경우, 주민소환운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

2.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

가. 일시 : 2008.6.3.(화) 오전9시부터

나. 장소 : (주)효성광주냉장 (경기도 광주시 삼동 288-1 소재)

다. 방법 : 각 본부별 5인1조로 운송저지팀 구성

고시 발효시 즉각 위 창고로 집결해 민주노총의 운송저지 투쟁에 결합

3. 조합원 촛불집회 참가

- 매일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각 지역본부 별로 적극 참가 조직

- 범국본·민주노총 집중집회 개최 시 각 지역본부별로 확대간부 이상 필참

4. 6.28. 전조합원 결의대회

가. 취지 : 물 사유화,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공공부문 민영화 등 행정의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정부정책 반대 및 공무원연금 개악 등 공직사회 현안 관련 투쟁 선언

나. 일시 : 2008.6.28.(토) 14시

다. 장소 : 서울(전국 집중)

라. 규모 : 5만명 이상

<별첨 2>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사유화 정책 비판

공무원 구조조정(퇴출제), 물사유화, 국립대법인화를 중심으로

2008. 5.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7층 / 전화 (02)2631-1948 / 전승 (02)2631-1949 / www.kgeu.org

공무원 구조조정(퇴출제) 현황과 문제점

1. 구조조정 현황

가. 서울시-농촌진흥청 대규모 퇴출제 강행

- 서울시는 헤드헌팅과 드래프트제 도입에 따라 2년 이상 근무자 4,200명을 대상으로 6급 이하 정기 전보인사를 진행하면서 상시평가와 다면평가 등 기존의 인사평가제도를 근거로 지난 4.23. 공무원 88명을 '2차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
- 농촌진흥청은 상시평가와 다면평가 등을 명분으로 4.28. 총 107명의 '농업현장기술지원단' 배치 발표, 5.6.부터 교육 돌입.

나. 행안부 지방정부 공무원 1만명 감원계획 발표

- 행정안전부는 지난 5.1. '2단계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 위 지침은 △지자체 일반직공무원 총액인건비 5%(최대 10%까지) 감축 △인구감소지역 공무원 감축(인구증가지역은 동결) △소규모 동 통폐합 △사업소와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민간위탁 추진 등을 담고 있음.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별로 감축인원을 할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 인천광역시·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과 할당된 숫자에 근거해 잇따라 퇴출방침을 발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5.20.까지 감원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를 관련 조례개정 시점으로 잡고 있음.

2.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주요 내용

가. 총액인건비의 5% 절감을 통한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 이상 감축

- 자치단체별로 최대 10%까지 총액인건비 절감
- 일반직공무원 절감비율에 맞춰 무기계약근로자 감축
- 기간제·시간제근로자도 정비(감원)
- 인구감소지역은 공무원 감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현행 정원 동결

나. 대국대과주의 적용

- 서울시의 '계약심사과'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다. 소규모 동 통폐합 등 구조조정

- 현행 331개 소규모 동을 162개로 통폐합 추진
- 유사 사업소와 각종 위원회 통폐합
- 사업 및 시설의 민간위탁 확대

라. 기구·정원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조직개편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급
- 행정안전부 지원 유관사업과 각종 평가 등에서 조직개편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배려
- 지침위반에 대해서는 다음해 총액인건비 산정시 감액
- 법령위반시 최종 산정된 보통교부세액에서 위반금액 감액

3. 공무원 구조조정의 문제점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비판

가. 지방자치제도 말살 및 헌법질서 유린

- 행안부는 이번 지방정부 조직개편지침을 하달하며 ‘권고’임을 밝혔지만, 만일 이 권고에 반할 경우 특별·일반교부세 불이익 조치 등을 내릴 방침임.
- 즉 ‘권고’의 형식을 빌렸을 뿐,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임.
- 특히 ‘총액인건비제 삭감’을 언급한 것은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보장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당시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으로,
- 이처럼 각종 교부세과 총액인건비제 등을 무기로 진행되는 정부의 ‘구조조정’ 강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하고 말살할 것으로 우려됨.
- 아울러 이같은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빌미로 한 지방정부 통제’는 다른 누구보다 헌법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가 이를 부정하는 행위로 비판됨.

나. ‘감원인원 할당’에 따른 객관성 실종

- 행정안전부는 조직개편의 이유로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1만명 이상 감원’ 기준을 정해놓은 뒤 각 지방정부별로 퇴출인원을 할당.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우 415명 감원방침을 발표하는 등, ‘할당 숫자’에 맞춘 퇴출이 줄을 잇고 있음.
- 결국 이번 조직개편은 ‘감원의 필요성’이나 ‘행정구조 개편’과는 거리가 먼 ‘공무원 집 단해고 지침’에 다름 아니며,
- 행안부의 이번 지침이 결국은 ‘공무원 감원실적 쌓기’에 주목적을 두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임.

다. 민원인 중심의 행정편의성 외면

-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통폐합 등을 통해 공무원을 감원토록 했으나,
- 반대로 인구가 늘어나 오히려 공무원정원을 늘려야 하는 곳은 ‘동결’하도록 돼있음.
- 즉 행안부의 지방정부 조직개편은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외면한 채 ‘퇴출’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음.

라. 지방정부 업무 증가 경향과 충돌

-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지방으로 위임된 사무 건수만도 1천 건이 넘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며 많은 중앙행정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도 지난 2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원을 책정할 것’ 등을 정함.
- 아울러 사회가 발전하며 점차 그 영역이 커지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업무도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임.
- 이처럼 지방정부의 위임사무와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을 ‘할당’에 따라 감원할 경우 결국 그 효과는 ‘부실행정’으로 나타나게 됨.

마. 공무원의 ‘정권에 줄서기’ 강요

- 퇴출제의 보다 큰 문제점은 고용불안에 내몰린 공무원의 ‘정치권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임.
- 지금과 같은 퇴출제는 객관적인 선발기준이나 평가기준이 없어, 상사가 ‘말 잘 듣고 말썽 안 피우는 사람’을 선발하는 결과로 나타날 위험이 높음.
- 이렇게 되면 공무원은 행정서비스의 수혜를 받아야 할 국민이 아닌, 기관장과 상급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됨.
- 퇴출에 대한 불안으로 내부자정기능이 상실되고 비판이 사라진 조직에서 개혁은 불가능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감.

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역행

- 행안부는 또 일반직공무원의 감원 규모에 비례해 무기계약직 역시 감축토록 했으나,
- 이는 지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역행하는 내용임.
- 이같은 내용이 시행될 경우, 정부정책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하위직과 비정규직 등 힘 없는 노동자를 우선 해고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 ‘건전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게 돼 노동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사. 사유화 확대로 행정공공성 상실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기인력계획상 민간위탁 사업.시설 내역>에 따르면 △공영 터미널 △하수처리장 △청소년 도서관 △어린이집 등 69개 사업.시설을 민간위탁할 방침임.
-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 ‘눈앞의 감원실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

4. 결론

- 이처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은 그 발상부터 시행계획까지 행정의 기본가치라 할 수 있는 ‘행정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파괴하는 정책이며,
- 서울시와 농촌진흥청의 퇴출제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며 동일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지침을 전면 철회해야 하며, 서울시와 농촌진흥청 등 기 진행된 퇴출제도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함.

물사유화법(물산업지원법)의 내용과 문제점

1. 정부의 물 정책, 사유화인가 아닌가

- 정부는 최근 물사유화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자 기획재정부 브리핑(5.23.) 등을 통해 “상수도 민영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이같은 변명의 근거를 ‘매각(소유권 이전)이 아닌 위탁(운영권 이전)’이란 점에서 찾고 있음.
- 하지만 세계은행이 2000년도에 발간한 보고서 <마닐라 물 위탁 - 정부 주요 관료들이 말하는 세계 최대 규모 물 사유화 The Manila Water Concession - A Key Government Officials Diary of the World's Largest Water Privatization>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위탁concession은 곧 사유화privatization로 이해되는 것이 국제적 상식임.
- 이처럼 세계은행이 상수도 사유화 방법으로서 위탁을 추천하는 이유는 '위탁' 방식이 철도, 가스, 상수도 등 네트워크 망산업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의 사유화이기 때문임. 결론적으로 '위탁'은 곧 사유화이며, 위탁이 '사유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세계에서 우리 정부밖에 없는 실정임.

2. 물사유화법(물산업지원법)의 배경과 취지

- 정부는 현행 수도법과 하수도법에도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으나, 보다 전국적, 종합적, 체계적인 구조개편(사유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
- 즉 환경부가 추진하는 ‘물산업지원법’은 지금까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던 지방상수도 구조개편(위탁)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강제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물산업화,사유화를 강제하기 위한 범국가적 법률을 제정하는 것
- 2008년 1월 환경부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 회람한 후 수정하여 4월에 다시 회람. 환경부는 최종본을 5월 말 쯤 확정해 2008년 6월 입법예고 뒤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

3. 물산업지원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가. 상수도 위탁, 기업화, 외국자본 유입 등 사유화방안 명시

1)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을 육성해야 함을 규정 (안 제4조)
- 물산업 육성의 기반 조성 (안 제8조 및 제9조)
 - : 상하수도 사업의 위탁을 통한 구조개편 독려
 - : 상하수도 사업의 기업화(법인화) 허용,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

- 인 포함)와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 설립 허용
- 전문상하수도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재정 혜택 부여 (제20조)

2) 문제점

-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적 상수도 제공이 아닌 물 사유화로 규정
 -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공공책무에 대한 명시 없이 물산업 육성에만 초점
- 상하수도 사업 위탁 독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 외국자본의 '물 장악' 전면 허용
 - 지자체의 민간부문 합작회사, 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그 대상에 “외국인과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고 명시해 외국자본의 한국 물장악을 독려
 - 한미간 체결된 FTA로 지자체가 상수도를 위탁 또는 기업화할 경우 FTA 규범에 따라 초국적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 반면 지자체 직영을 유지할 경우 FTA 규범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WTO GATS) 1조3항도 정부(지자체)가 직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는 협정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해 개방을 강제하지 않고 있음. 즉 바꿔 말하면 '상수도 사유화'는 WTO 협정에 따라 곧바로 초국적기업의 한국 물 장악을 보장하는 정책이 되는 셈임.
 - 남미 등 물 사유화를 통한 사회적 위기를 맞이한 국가 사례 역시 지자체와 민간 또는 공기업 간 공동출자하여 상수도를 운영해 발생한 문제였음.
 -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위탁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법인화(기업화)까지 허용

나. 특별교부세를 통한 물 사유화 강제

1) 주요내용

-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 및 특별교부세 부여 (안 제16조 및 제19조)
 - : 시·도지사 이행실적과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의 운영실태 분석 매년 그 결과 공표,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부여 (특별교부금)

2) 문제점

- 물산업지원법은 효율성과 경제성, 수익성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게 되고, 이는 결국 각 지자체에 상수도 사유화를 강제하는 무기로 작용할 것
- 지자체 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지역별 물위기도 우려

다. 상수도 관련 종합계획 난립으로 행정 비효율성 초래

1) 주요내용

- 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내지 제6조)

-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 단위의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인 계획에 기반하여 물산업 육성정책 추진

2) 문제점

- 수도법과 상충·중복,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과도 충돌
 - 물산업지원법 상당 부분 상수도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수도법과 상충하거나 중복. 특히 물산업육성기본 및 시행계획은 수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전국수도종합계획과 상충하거나 중복
 - 애초 해야 하는 계획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공공적 상수도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 업무 비효율화만 양산할 것

라. ‘해외진출’ 필미로 제3세계 물주권 침해

1) 주요내용

- 물산업 해외사업 진출 지원 (안 제10조 및 제13조)
 - :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 사업 지원
- 물산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2) 문제점

- 지자체 차원의 지방상수도 재정적자 해소와 공공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재정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채 실효성조차 의심스러운 해외진출에 국민 혈세를 사용하겠다는 것
- 특히 해외시장 진출의 경우, 이미 제3세계도 물 사유화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런 위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마. 빈 수레만 요란한 서비스 개선과 농어촌 지원

1) 주요내용

-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안 제15조 및 제19조)
 - : 상하수도 요금, 서비스 평가 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소비자의 의견·불만 등을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 상담기구를 설치·운영
 - :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상하수도 시설 투자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2) 문제점

- 소비자 상담이나 민원처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재정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농어촌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확대도 큰 규모의 재정이 요구되는 사안임.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
- △소비자에 대한 정보 공개 △서비스 개선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

급 확대는 상수도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물산업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면 상충됨. 더욱이 현재 이명박 정부가 지자체 예산 10% 감축,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범위 내”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오히려 물산업지원법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조항

4. 결론

가. 물산업지원법은 반인권.반헌법 법안

-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과 물산업지원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 기본적 인권을 심각히 침해
- 아울러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10조과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35조와도 불합치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5 주요내용

물에 대한 권리란 모든 사람이 안전하며 접근할 수 있고 지불 가능하고 충분한 물을 사용할 권리이다. 당사국은 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가 있다. 특히 기업이나 위탁업체 등 제3자가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제3자가 물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부정하거나 물을 오염시키고 불공평하게 추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물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물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해 참여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근거하여 전략과 계획을 만드는 것은 최소핵심 의무이기도 하다. 이때 당사국은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할 의무가 있다.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값이 인상되거나 정부가 물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이며, 물에 대한 권리가 추상적인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나. 정부책임을 지자체와 국민에 떠넘기는 법

- 지난 수십년간 국가의 잘못된 수자원개발 정책과 수돗물 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그 책임을 지자체와 국민에서 떠넘기는 법
- 이미 존재하는 수도법이나 각종 제도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적 비효성과 막대한 재정적 손실만 야기할 것

다. 물산업지원법 전면 폐기, 정부의 책임과 공공적 상수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대안적 법 제정 시급

국립대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1. 국립대법인화의 추진의도

- 국립대학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국립대학 법인법)은 대학의 경쟁력제고,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 하에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겠다고 추진되고 있지만
-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국립대 재정 구조를 완전히 민영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실제 추진 의도임

2. 국립대법인화법 추진경과

- 2003.8.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법 제정' 방침 발표
- 2005.5.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 대통령 보고
- 2007.2. 정부-열린우리당 당정협약에서 '국립대법인화법'은 정부입법, 울산국립대와 인천시립대는 의원입법으로 추진기로 결정
- 2007.3.6. '국립대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 2007.6.12. 교육부, 국회 교육위에 '국립대법인화법' 제출

3. 국립대법인화법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

가. 이사회를 통한 정부통제

- 사립대학처럼 법인 재산을 관리.책임지는 이사회를 설치함(법 제18~20조)
- 이사는 15인 이하로 두되, 당연직 이사는 총.학장, 교육부 추천 인사, 기획예산처 추천 인사, 소재지 관할 광역지자체 단체장 또는 추천 인사, 동창회 대표 또는 추천인사, 교육연구위원회 장, 재무경영협의회 장 등 7인임. 다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 정부나 지자체 인사 3인이 당연직 이사가 되는 까닭에 이사회를 통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음. 학교운영의 최종 책임은 총.학장에게, 법인운영의 최종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

나. 이사회와 총장의 갈등구조 증폭

- 이사회에 교육연구위원회의 장, 재무경영협의회의 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게 되는데, 교육연구위원회는 교무, 학생, 연구, 입학관리 업무에 대한 심의 기능을, 재무경영협의회는 기획, 사무 업무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

- 따라서 심한 경우 총.학장이 허수아비가 되고, 이사장에 의한 학교운영이 가능함. 물론 이런 형태가 지속되다가 학교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학교운영의 법적 책임자인 총.학장이 책임질 것임

다. 총학장 간선화

- 총.학장의 선임은 이사회 산하의 총.학장 추천위원회가 2~3인의 후보자를 선출하여 이사회에 선임 요청하고,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여 교육부에 제청을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짐(법 제16조)

라. 정부지원 축소

- 법인화 이후에는 학교가 4년 단위의 경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매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고, 매년 그 실적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함. 교육부는 실적을 평가한 후 행.재정 지원에 반영함(법 제36조)
-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자율과 책무성’, ‘평가 후 차등지원’ 형태임. 이 형태에서는 재정지원이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줄어들 여지가 많음. 또는 재정지원 삭감을 우려한 허위 보고, 실적 위주의 대학 운영, 교육부 눈치보기식 대학 운영이 만연할 수 있음

마. 등록금 폭등 우려

-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이만한 부실사학도 없음. 부동산위주의 재산으로 수익용 기본 재산이 사실상 없으므로 재단전입금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재정 수입은 수익사업, 빚, 등록금에 의존해야 함.
- 최소한 사립대학 수준의 등록금의 인상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재산이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수익용 기본재산이 사실상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든든한 재단의 사립대학보다 등록금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

바. 교직원 고용불안 증대

- 직원은 법인 전환 이후 공무원으로 남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법 부칙 제4조). 공무원으로 남게 되면, 법인 전환 이후 5년 안에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로 전출해야 함.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일하게 될 전출지를 선택할 수 없어 그간의 경력이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도 높음. 전출을 둘러싼 민원과 청탁 등 부정비리도 만연할 것으로 우려됨
- 법인 직원으로 남을 경우, 구조조정의 위협에 노출됨. 법인 재정이 취약해지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벌어질 수 있는데, 다른 기업체와는 달리 교육기관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까닭에 조직의 구조 변화 보다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숨통을 틔우기 위해 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에 우선적으로 나서게 될 수밖에 없음.

사. 대학서열화 강화 및 지방 군소 국립대학 고사

- 정부의 재정지원이 감소될 경우 '수도권-지방'간, 지방의 '대도시-중소도시'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며, 장기적으로 중소도시 소규모 국립대학은 퇴출될 수밖에 없음.
- 아울러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은 등록금을 대도시 대학에 비하여 더 높게 책정하게 됨.

아. 기초학문 붕괴

- 전체 대학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이 생존을 위해 개성화, 특성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실용학문-응용학문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학마저 실용학문-응용과학 중심으로, 거기서 더 나아가 실용학문-응용과학 중에서도 개별기업이나 대학 차제의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분야의 연구만을 중시하도록 만듦으로써 국립대학의 연구-교육체제를 결정적으로 왜곡하게 됨.

4. 결론

- 국립대법인화법은 사실상의 '사립화 법'이며, 국립대학의 발전방안이라고 볼 수 없기에 폐기돼야 함.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자율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이사회를 통한 대학지배구조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 내 민주주의였던 총장직선제를 부정하고 있음. 또한, 사립학교법에도 나와 있는 개방형 이사제라든지 대학평의원회는 애초부터 삭제해 사실상 대학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해체하고 있음.
- 재정적 불안정성에 노출됨. 과거 검토 안에는 재정지원과 관련해 고등교육예산 증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법안에는 삭제됨. 이는 실질적으로 재정지원 감소를 인정한 것에 다름없음. 그로 인해 등록금 인상도 심각하게 나타날 것임.
- 교직원은 공무원직을 상실함. 이것이 싫으면 실업자가 되거나 전출되어야 함. 남아있을 경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음.
- 전체적으로는 책무성만을 강조하고 있음. 자율성은 대학의 경영자만의 자율성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학의 경영자가 아닌 구성원은 자율성이 배제된 가운데 그 직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혹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함께 짊어질 수밖에 없음.